

실무 2

온라인 동영상	(02) 6331-1009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kimcodi.com
서울 김재규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 김재규경찰학원	(062) 236-3112		
안동 김재규공무원·경찰학원	(054) 823-9112		

1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는 수사기관의 객관적 혐의(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혐의가 있을 것이라 인식)에 의하여 개시된다.
- ② 체포·구속을 위한 범죄혐의는 객관적 혐의를 말하며 일반인의 기준이 아닌 경찰관의 기준에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 ③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신의칙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 ④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수사의 조건이므로 이와 같은 고소 또는 고발이 없는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해설 ▶ ①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혐의가 있을 것이라 인식)에 의하여 개시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② 체포·구속을 위한 범죄혐의는 객관적 혐의를 말하며, 이는 경찰관의 기준에서 인정되는 혐의가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는 혐의를 말한다.
 ③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8.10.23. 2008도7362).
 ④ 법률에 의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3.10. 2008도7724).

정답 ③

2 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사단계의 용의자를 피의자(피내사자·피진정인 포함)라 한다.
- ② 형식적 의미의 내사단계에서는 임의적인 수단을 원칙으로 하므로 압수·수색·현행범인체포를 할 수 없다.
- ③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입건(立件)’이라는 행위를 통해 수사를 개시한다.
- ④ 수사진행 과정에서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이 특별한 규정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 해설** ▶ ① 내사단계의 용의자를 피내사자 또는 피진정인이라고 한다. 피의자는 내사단계를 넘어 수사단계에서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 ② 형식적 의미에서 내사 단계에서도 증거수집을 위한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 등)과 현행범체포 등을 할 수 있다(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 참조).
- ③ 옳은 설명이다.
- ④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정답 ③

3 「범죄수사규칙」상 변사사건 처리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찰관은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친족·이웃사람·친구, 시·군·구·읍·면·동의 공무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이 검시를 할 때에는 검시 관련 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때 검시에 참여한 검시조사관은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이 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른 검시를 한 경우에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③의 경우에 있어서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검증을 하되 의사에게 시체의 해부를 위촉할 수 있다.

- 해설** ▶ ① 경찰관은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친족·이웃사람·친구, 시·군·구·읍·면·동의 공무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33조).
- ② 동규칙 제32조 제3항
- ③ 사법경찰관은 검시를 한 경우에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동규칙 제36조 제1항).
- ④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검증을 하되 의사에게 시체의 해부를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동규칙 제36조 제2항).

정답 ②

4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살인, 강도, 강간, 약취유인 사건은 수사본부 설치대상이 되는 중요사건이나, 방화 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지방청 형사·수사과장 또는 사건관계 과장 및 사건관할지 경찰서장은 수사본부장이 될 수 있다.
- ③ 수사전임관은 지방경찰청·경찰서 사건 주무과의 경정 또는 경감급 중에서 부분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④ 수사본부장은 오랜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imcodi.com 에서 제공됩니다.

- 해설** ▶ ① 살인, 강도, 강간, 약취유인, 방화 사건 모두 수사본부 설치대상이 되는 중요사건이다(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 제1호).
- ② 동규칙 제9조 제1항
- ③ 수사전입관은 지방경찰청·경찰서 사건 주무과의 경정 또는 경감급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동규칙 제11조 제1항).
- ④ 지방경찰청장은 오랜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동규칙 제23조 제1항 제2호).

정답 ②

5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조피해자가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구조피해자가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加功)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구조피해자가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구조피해자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다만,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해설** ▶ ① 구조피해자가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3항 제2호).
- ② 동법 제19조 제4항 제2호
- ③④ 동법 제19조 제3항 제5호·제6호

[핵심정리] 구조금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사유(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2항부터 제4항)

구분	내용
전부 미지급 사유	①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2. 직계혈족 3. 4촌 이내의 친족 4. 동거친족 ② 구조피해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2.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3.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

전부 미지급 사유	4.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 5.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다만,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일부 미지급 사유	①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위 칸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구조피해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2.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加功)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

※ 다만,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동법 제19조 제7항).

정답 ①

6 「범죄수사규칙」상 제척·기피·회피제도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찰관은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인 때에는 수사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 ② 변호인은 경찰관이 사건 청탁, 인권 침해, 방어권 침해, 사건 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호하는 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경찰관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기피 신청을 접수한 감사부서의 장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기피 신청이 있었던 경우, 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는 해당 신청을 기각한다.
- ④ 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있어 기피사유가 있거나 기타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할 수 있다.

해설 →

- ① 범죄수사규칙 제8조
- ② 변호인은 변호하는 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동규칙 제8조의 2 제2항).
- ③ 기피 신청을 접수한 감사부서의 장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기피 신청이 있었던 경우, 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는 해당 신청을 각하한다(동규칙 제8조의4 제1항).
- ④ 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있어 기피사유가 있거나 기타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동규칙 제8조의5 제1항).

정답 ①

7 공조수사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평상공조 - 평소 예견가능한 일반적인 공조로 수배, 통보, 미행, 촉탁 등이 있음
- ② 활동공조 - 현재 제기되는 당면문제에 대한 공조수사 활동으로 수사비상배치, 불심검문, 조회, 잠복 등이 있음
- ③ 비상공조 - 중요특이사건 발생 등 특수한 경우의 공조로 수사비상배치, 수사본부설치운영 등이 있음
- ④ 횡적공조 - 상·하급 관서는 물론 관서 내의 상·하급부서 내지 상하급자 상호간의 상명하복 관계를 의미

해설 → ①②④ 모두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③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공조수사의 종류

구분	내용	
구분 I	평상공조	평소 예견가능한 일반적인 공조로서 수배·통보·조회·촉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상공조	중요하거나 특이한 사건이 발생할 때 행하는 공조로서 수사본부 운영·설치, 수사긴급배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구분 II	횡적공조	경찰관서 상호간은 물론 관서 내의 각 부서 내지 횡적 동료 상호간의 공조로서 정보의 교환, 수사자료의 수집활용, 수배통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종적공조	상·하급 관서는 물론 관서 내의 상·하급 부서 내지 상·하급자 상호 간의 상명하복 관계를 말한다.
구분 III	자료공조	경찰이 필요로 하는 모든 수사정보를 자료화함으로써 그 시대의 모든 경찰이 이를 자기 수사에 활용함은 물론, 그 자료가 영구히 남아서 후세의 경찰이 이를 계속 승계해 가면서 활용하는 공조로서 자료의 수집과 조회가 이에 해당한다.
	활동공조	현재 제기되는 당면문제에 대한 공조수사 활동으로서 불심검문, 미행, 잠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답 ③

8 감별수사에서 감의 판단자료에 대한 다음 내용 중 <보기1>과 <보기2>의 연결이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1>	
㉠ 연고감	㉡ 지리감

<보기2>	
㉢ 가족의 외출시각 기타 습관을 잘 알고 있었을 때 ㉣ 도주경로가 상세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 목표로 되는 물건이 있는 곳으로 직행하고, 필요 이상으로 물색하지 않았을 때 ㉥ 범인의 언어에서 그 지방 사투리가 있을 때 ㉦ 살인사건으로 피해자가 접대한 흔적이 있을 때 ㉧ 장물의 은닉장소가 그 자리에 정통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 침입구가 불명확할 때 ㉩ 특정 장소의 정기 통행자 등을 노렸을 때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imcodi.com 에서 제공됩니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 ㉡㉢㉣㉤ 4 항목은 연고감 판단자료이고, ㉢㉣㉤㉥ 4 항목은 지리감 판단자료이다.

[핵심정리] 연고감(緣故鑑)과 지리감(地理鑑) 판단자료

구분	내용
연고감 판단자료	- 처음 방문한 자나 타인이 잘 알 수 없는 장소로 침입한 때(침입구가 불명확할 때) ㉤ - 시정장치를 여는 특수방법을 알고 있는 상황에 있을 때 - 가옥의 구조, 방의 배치를 잘 알고 있는 상황일 때 - 가족의 외출시각 기타 습관을 잘 알고 있었을 때 ㉡ - 목표로 되는 물건이 있는 곳으로 직행하고, 필요 이상으로 물색하지 않았을 때 ㉢ - 위장공작 등 발각방지를 위하여 교묘한 수단을 썼을 때 - 살인사건으로 피해자가 접대한 흔적이 있을 때 ㉣
지리감 판단자료	- 도주경로가 상세한 상황에 놓였을 때 ㉢ - 범인의 언어에서 그 지방 사투리가 있을 때 ㉣ - 장물의 은닉장소가 지리에 정통한 상황에 놓였을 때 ㉤ - 특정 장소의 정기 통행자 등을 노렸을 때 ㉥

정답 ②

9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상 피해통보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찰서장은 살인에 해당하는 범죄의 신고를 받았거나 또는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경찰시스템을 활용하여 피해통보표를 전산입력하여 경찰청장에게 전산송부하여야 한다.
- ② 피해통보표를 입력한 담당경찰관은 사건발생보고서 검토시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에 보고되는 속보 사건을 포함한 해당 범죄의 피해통보표의 입력여부 및 입력된 피해통보표 내용의 오류나 입력사항 누락여부를 검토, 수정하여야 한다.
- ③ 피해통보표가 피의자가 검거되었을 때, 피의자가 사망하였을 때, 피해통보표 전산입력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전산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 ④ 범행수법이 동일한 피해통보표를 2건 이상 입력하였을 때에는 동일범에 의한 범죄여부, 재범 우려 등을 종합분석하여 수사자료로 활용한다.

해설 ▶ ① 살인은 수범범죄가 아니므로 경찰서장은 살인에 해당하는 범죄의 신고를 받았거나 또는 인지한 경우 피해통보표를 전산입력하여 경찰청장에게 전산송부하지 아니한다(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7조 제1항 참고).
 ② 사건 담당과장은 사건발생보고서 검토시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에 보고되는 속보 사건을 포함한 해당 범죄의 피해통보표의 입력여부 및 입력된 피해통보표 내용의 오류나 입력사항 누락여부를 검토, 수정하여야 한다(동규칙 제7조 제3항).
 ③ 피해통보표가 피의자가 검거되었을 때, 피의자가 사망하였을 때, 피해통보표 전산입력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전산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2조 제2항).
 ④ 동규칙 제8조 제2항

정답 ④

10 리드(REID) 테크닉을 활용한 신문기법의 순서이다.①부터④까지 각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접적 대면 → (①) → 부인(否認)다루기 → (②) → 관심 이끌어내기 → (③) → 양자택일적 질문하기 → (④) → 구두자백의 서면화

- ① 용의자에게 범행에 대한 합리화·정당화 사유를 제공하여 비난가능성을 줄여주는 화제를 언급한다.
- ② 수사관이 주도하는 신문의 화제를 흐리는 용의자의 진술을 압도한다.
- ③ 전(前)단계가 효과적이라면 피의자가 수사관을 회피하기 쉬우므로 시선을 맞추고 화제를 계속 반복하는 동시에 피의자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한다.
- ④ 용의자가 수사관의 질문에 선택적으로 답하는 단계를 지나 적극적으로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도록 한다.

해설 ▶ 리드(REID) 테크닉 신문기법은 1단계 : 직접적 대면(direct and positive confrontation), ① 2단계 : 신문 화제의 전개(theme development), 3단계 : 부인(否認) 다루기(handling denials), ② 4단계 : 반대논리 격파(overcoming objections), 5단계 : 관심 이끌어내기(procurement and retention of the suspect's attention), ③ 6단계 : 우울한 기분 달래주기(handling the suspect's passive mood), 7단계 : 양자택일적 질문하기(presenting an alternative question), ④ 8단계 : 세부사항 질문(having the suspect relate details of the offense), 9단계 : 구두 자백의 서면화(converting an oral confession into a written confession) 순서로 이루어진다. ③ 6단계는 사실대로 말할 것을 촉구하며 동정과 이해를 표시한다. “전(前)단계가 효과적이라면 피의자가 수사관을 회피하기 쉬우므로 시선을 맞추고 화제를 계속 반복하는 동시에 피의자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한다”는 5단계인 관심 이끌어내기를 말한다.

정답 ③

11 「범죄수사규칙」상 송치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주무과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주무과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관서장인 사법경찰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 ②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기록목록-압수물 총목록-의견서-그 밖의 서류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하고, 그 밖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 ③ 의견서와 그 밖의 서류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고 기록목록, 압수물 총목록, 의견서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이 수리(受理)한 고소 또는 고발 사건 피의자를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범죄경력조회(지문조회)통보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 ①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관서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에는 수사주무과장인 사법경찰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192조 제6항).
 ②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압수물-기록목록 총목록-의견서-그 밖의 서류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하고, 그 밖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한다(동규칙 제192조 제3항).
 ③ 동규칙 제192조 제4항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imcodi.com 에서 제공됩니다.

- ④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서류에 사건송치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피의자환경조사서, 피의자의 등록기준지조회회답서 및 범죄경력조회(지문조회)통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92조 제1항).

정답 ③

12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피의자의 유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성유치인은 친권이 있는 24개월 이내의 유아에 대해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대동할 수 있다.
- ② 피고인 · 피의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며 제한할 수 없다. 다만,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에는 경찰관이 입회 또는 참여할 수 있다.
- ③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한다.
- ④ 동시에 2명 이상의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 해설** ▶ ① 여성유치인은 친권이 있는 18개월 이내의 유아에 대해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대동할 수 있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2조 제2항).
- ② 변호인과 유치인의 접견 또는 서류 그 밖에 물건의 접수에 있어서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거리에서 관찰할 경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서류 기타 물건의 접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사 또는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 등이 수수되지 않도록 관찰하여야 한다(동규칙 제34조 제1항)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에는 경찰관이 입회 또는 참여할 수 없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참고).
- ③ 동규칙 제7조 제2항
- ④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동규칙 제7조 제1항).

정답 ③

13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호송 중 사고발생시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피호송자 사망 시, 시체와 서류 및 영치금품의 인도를 받은 경찰관서는 즉시 호송관서와 인수관서에 사망일시, 원인 등을 통지하고, 서류와 금품은 호송관서에 송부한다.
- ② 피호송자 사망 시, 통지 받을 가족이 없거나, 통지를 받은 가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않으면 구, 시, 읍, 면장에게 매장을 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 ③ 피호송자 도주 시, 호송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즉시 상급감독관서 및 관할검찰청에 즉보하는 동시에 인수관서에 통지하고 도주 피의자의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도주예상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④ 피호송자 발병 시, 중증으로써 호송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피호송자 및 그 서류와 금품을 호송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imcodi.com 에서 제공됩니다.

- 해설** ▶ ①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5조 제2호 나목
- ② 통지 받을 가족이 없거나 통지를 받은 가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않으면 구, 시, 읍, 면장에게 가매장을 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동규칙 제65조 제2호 라목).
- ③ 호송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즉시 상급감독관서 및 관할검찰청에 즉보하는 동시에 인수관서에 통지하고 도주 피의자의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동규칙 제65조 제1호 나목).
- ④ 중증으로써 호송을 계속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피호송자 및 그 서류와 금품을 발병지에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동규칙 제65조 제3호 나목).

정답 ①

1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정신 발육이 일시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지적장애인은 ‘발달장애인’에 해당한다.
- ② 수사기관은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③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신고를 접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발달장애인 또는 유기등 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하여야 한다.
- ④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 해설** ▶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지적장애인이 ‘발달장애인’에 해당한다(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 ② 수사기관은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동법 제12조 제3항·제4항).
- ③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신고를 접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발달장애인 또는 유기등 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동법 제16조 제2항).
- ④ 동법 제13조 제2항

정답 ④

15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심사위원회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둔다. 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분기별로 개최한다.
- ② 살인, 방화, 악취유인죄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또는 강도죄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은 우범자 선정대상이다.
- ③ 형사(수사)과 담당자는 우범자에 대해서 편입 후 1년 동안 매 분기별 1회 이상 범죄관련 여부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우범자 편입 대상자가 소재불명일 경우 주민등록지 경찰서장은 먼저 우범자로 편입한 후 실제 거주 예정지(귀주지) 경찰서로 이첩하고, 귀주지 경찰서에서 소재확인 후 불명 시 행방불명 처리하여야 한다.

해설 ▶ ①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제2항
 ② 동규칙 제3조 제2호·제3호
 ③ 동규칙 제6조 제2항
 ④ 우범자 편입 대상자가 소재불명일 경우 귀주지 경찰서장은 먼저 우범자로 편입한 후 주민등록지 경찰서로 이첩하고, 주민등록지 경찰서에서 소재확인 후 불명 시 행방불명 처리하여야 한다(동규칙 제4조 제2항).

정답 ④

16 지문(指紋)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흙 등에 나타난 지문은 용선 사이의 고랑부분이 착색되고 용선부분은 착색되지 않은 역지문(逆指紋)이 형성된다.
- ② 잠재지문의 채취법 중 강력순간접착제법과 옥도가스법은 기체법이고, 오스믹산 용액법과 닐히드린 용액법은 액체법이다.
- ③ 강력순간접착제법은 백색, 옥도가스법은 다갈색, 오스믹산 용액법은 자색, 닐히드린 용액법은 자청색으로 잠재지문이 현출된다.
- ④ 우리나라의 지문분류체계는 독일 Hamburg경찰청에 근무하던 Henry가 창안한 Hamburg식 분류법을 활용하고 있다.

해설 ▶ ① 옳은 설명이다.
 ② 잠재지문의 채취법 중 강력순간접착제법, 옥도가스법, 오스믹산 용액법은 기체법이고, 닐히드린 용액법은 액체법이다.
 ③ 강력순간접착제법은 백색, 옥도가스법은 다갈색, 오스믹산 용액법은 흑색, 닐히드린 용액법은 자청색으로 잠재지문이 현출된다.
 ④ 우리나라의 지문분류체계는 독일 Hamburg경찰청에 근무하던 독일의 테오도어 로셔(Theoder Roscher)가 창안한 Hamburg식 분류법을 활용하고 있다.

정답 ①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imcodi.com 에서 제공됩니다.

17 발화부의 판단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소훼되면서 거북등 형태의 문양을 형성하는데 그 크기가 발화부에서 멀어질수록 크고, 근접할수록 작고 조밀하게 형성된다.
- ② 화염은 일반적으로 수직가연물을 따라 상승하며 역삼각형으로 연소한다. 따라서 출화부는 발화부의 위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
- ③ 발화부에서 가까울수록 탄화심도는 깊어지고 목재표면의 균열흔은 굵어지는 경향이 있다.
- ④ 기둥, 벽, 가구류는 발화부로부터 사방을 향하여 도괴되는 경향이 있다.

- 해설** ▶ ①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소훼되면서 거북등 형태의 문양을 형성하는데 그 크기가 발화부에 근접할수록 크고, 멀어질수록 작고 조밀하게 형성되는 특징이 있다.
- ② 옳은 설명이다.
 - ③ 발화부에서 가까울수록 탄화심도는 깊어지고, 목재표면의 균열흔은 가늘어지는 경향이 있다.
 - ④ 기둥, 벽, 가구류는 발화부를 향하여 사방으로부터 도괴되는 경향이 있다.

정답 ②

18 혈흔형태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혈액은 물리학의 법칙을 따르므로 혈흔형태는 예측가능하고 재현할 수 있으며, 큰 혈액방울은 작은 혈액방울 보다 더 빨리 날아간다.
- ② 혈흔형태분석을 통해 임팩트(충돌) 각도, 외력이 가해진 방향, 일부 사건 가격횡수를 추정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의 행위순서는 추정할 수 없다.
- ③ 혈흔의 형태를 보고 혈흔이 움직인 방향을 구분할 수 있으며, 혈흔이 움직인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꼭짓점을 갖고 있다.
- ④ Spine은 낙하혈에서 볼 수 있는 둥근 혈흔 주변의 가시 같은 모양의 혈흔이고, 자혈흔은 비산혈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원래 혈흔(모혈흔)에서 튀어서 생긴 작은 혈흔이다.

- 해설** ▶ ① 작은 혈액방울이 큰 혈액방울보다 훨씬 더 빨리 날아간다.
- ② 혈흔형태분석을 통해 임팩트(충돌) 각도, 외력이 가해진 방향, 일부 사건 가격횡수는 물론 현장에서의 행위순서도 추정할 수 있다.
 - ③ 혈흔의 형태를 보고 혈흔이 움직인 방향을 구분할 수 있으며, 혈흔이 움직인 방향으로 항상 꼭짓점을 갖고 있다.
 - ④ 옳은 설명이다.

정답 ④

- ④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이 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해설 ▶ ①②③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이 출금금지 대상이다(동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정답 ④

22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과 선거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며 그 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 ②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며 그 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 ③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다.
- ④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다.

해설 ▶ ① 공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 ②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며 그 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동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
- ③④ 동법 제34조 제1항 제1호·제2호

정답 ②

23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경찰방문 및 방법진단은 순찰근무 시의 근무내용이다.
- ㉡ 행정근무 시에는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를 수행한다.
- ㉢ 관리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은 지역경찰관서장의 직무이다.
- ㉣ 경찰 중요 시책의 홍보 및 협력치안 활동은 관리팀의 직무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해설 ▶ ㉠ 항목이 옳다.

- ㉠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3항 제5호
- ㉡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는 상황근무에 해당한다(동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
- ㉢ 관리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은 순찰팀장의 직무이다(동규칙 제8조 제2항 제2호).
- ㉣ 경찰 중요 시책의 홍보 및 협력치안 활동은 지역경찰관서장의 직무이다(동규칙 제5조 제3항 제4호).

정답 ①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imcodi.com 에서 제공됩니다.

24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불심검문 시 경찰관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② 불심검문 시 진술거부권은 반드시 고지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
- ③ 대상자가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인근 경찰관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인근 경찰관서로 임의동행 시 가족 등에게 연락할 기회를 부여했다면 불심검문에 의한 임의동행은 체포나 구속이 아니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 ①②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③ 동법 제3조 제2항
 ④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동법 제3조 제5항).

정답 ④

25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가 아닌 재산에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주취자는 경찰관 보호조치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 ② 업무중에 응급의료 요청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 ③ ②에서의 형사처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적용하여 가능하다.
- ④ 보호조치대상자에 대한 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는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설 ▶ ①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보호조치 대상이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
 ②③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이와 같은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60조 제2항 제1호).
 ④ 보호조치대상자에 대한 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는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7항).

정답 ②

26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지역경찰의 근무일지 및 근무수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황근무자는 근무 중 주요사항을 근무일지(갑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순찰근무자는 근무 중 주요사항을 근무일지(을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imcodi.com 에서 제공됩니다.

- ③ 근무일지는 3년간 보관한다.
- ④ 사용을 종료한 근무수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즉시 폐기한다.

해설 ▶ ①② 지역경찰관리자와 상황근무자는 근무 중 주요사항을 근무일지(을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순찰근무자는 근무 중 주요사항을 근무수첩에 기록하고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제2항).

③④ 근무일지와 사용 종료한 근무수첩은 3년간 보관한다(동규칙 제42조 제3항).

정답 ③

27 「경비업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항(항공기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는 특수경비업무라 한다.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특수경비원에는 종사할 수 없으나 일반경비원에는 종사가 가능하다.
- ③ 경비업자는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 ④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 ①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마목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경비지도사,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모두 될 수 없다(동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③ 동법 제7조 제2항

④ 동법 제4조 제1항

정답 ②

28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②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그 업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 ③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집 등의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한 업소이다.
- ④ 경찰서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 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여야 하고, 청소년이 해당 구역을 통행하려 할 때에는 통행을 막을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은 해당 구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imcodi.com 에서 제공됩니다.

- 해설** ▶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4항).
- ②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동법 제29조 제6항).
- ③ 동법 제2조 제5호 나목 3),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동법 제31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을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통행을 막을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은 해당 구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동법 제31조 제4항).

정답 ③

29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방조범의 경우 감경한다.
- ② 18세 미만의 자는 범칙자에서 제외된다.
- ③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만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 ④ 「경범죄 처벌법」 위반자가 서명 후 위반자용 용지와 은행납부용 용지를 지급받자 화를 참지 못하여 통고처분 용지를 찢은 경우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한다.

- 해설** ▶ ① 경범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경범죄 처벌법 제4조). 경범죄의 경우 방조범 감경을 할 수 없다.
- ② 경범죄 처벌법 제6조 제2항 제4호
- ③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므로(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항), 경미사건의 현행범체포 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14조가 적용되지 않아 주거가 분명한 때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 ④ 형사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신이 보관하던 진술서를 임의로 피고인에게 넘겨준 것이라면, 위 진술서의 보관책임자인 경찰관은 장차 이를 공무소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의도에 처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진술서는 더 이상 공무소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문서가 아닌 것이 되어 공용서류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2.24. 98도4350). 이 판례의 취지에 의할 때 옳은 지문이다.

정답 ②

30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체없이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형의 집행정지는 사전에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③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 양형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imcodi.com 에서 제공됩니다.

- ④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해설** ▶ ①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8조 제1항).
- ② 형의 집행정지는 사전에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동법 제18조 제4항).
- ③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 제2항). 양형에 필요한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 ④ 동법 제4조

정답 ④

3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이 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
-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A는 甲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성매매수자인 B에게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B가 甲이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면 A는 이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 ③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이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④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성매매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고용대상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연령확인 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 해설** ▶ ① 대법원 2011.11.10. 2011도3934
- ②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알선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알선행위를 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알선행위를 한 사람의 책임에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다.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그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지만, 이에 더하여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18. 2015도15664). B가 甲이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A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
- ③ 대법원 2015. 3.20. 2014도17346
- ④ 대법원 2014. 7.10. 2014도5173

정답 ②

32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및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인터넷 안전드림)를 운영한다.
- ②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발견된 가출인의 자료는 수배 해제 후로부터 5년간 보관하며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 및 치매환자는 수배 해제 후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
- ③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신고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관은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고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④ 경찰관서장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발견하거나, 보호실종아동등 또는 보호시설 무연고자의 보호자를 확인하거나, 본인 또는 보호자가 공개된 자료의 삭제를 요청하는 때는 지체 없이 인터넷안전드림에 공개된 자료를 삭제해야 한다.

- 해설** ▶ ①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및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인터넷 안전드림)를 운영한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6조 제1항).
- ②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의 자료는 수배 해제 후로부터 5년간 보관하며, 발견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 및 치매환자의 자료는 수배 해제 후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동규칙 제7조 제3항).
- ③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신고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관은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고접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동규칙 제7조 제6항).
- ④ 동규칙 제7조 제5항

정답 ④

3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정폭력행위자’에는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이 아닌 공범을 포함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재발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해설** ▶ ①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 ②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 제8조의2 제1항).
- ③ 동법 제5조
- ④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의3 제1항).

정답 ③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imcodi.com 에서 제공됩니다.

3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중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는 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 ② ①에서의 ‘격리’는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된다.
- ③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만 있다면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설 ▶ ①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3항
 ③ 동법 제19조 제1항
 ④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 제13조 제1항).

정답 ④

35 「소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년부는 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② 촉범소년 및 우범소년이 있을 때에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 ③ 범죄소년, 촉범소년 및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하여야 한다.
- ④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요청지,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해설 ▶ ① 소년법 제7조 제1항
 ② 촉범소년 및 우범소년이 있을 때에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2항).
 ③ 범죄소년, 촉범소년 및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4조 제3항).
 ④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동법 제3조 제1항).

정답 ①

36 경찰장구와 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찰관의 무기 휴대는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경찰법」에 규정되어 있다.
- ②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경찰관을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신체·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imcodi.com 에서 제공됩니다.

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특히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하지 아니하고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할 수 있다.

-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해설** ▶ ① 경찰관의 무기 휴대는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20조 제2항).
- ② 경찰관을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특히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아니하고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할 수 있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 ③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 ④ 동법 제10조의4 제1항

정답 ④

37 경찰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금까지의 경찰윤리교육은 개인의 청렴도 등을 강조하는 거시적 접근법 위주로 이루어져왔다.
- ② 경찰서장이 ‘수당 허위 수령 금지’의 교양을 하였음에도 A순경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였다면 사회적·외적 윤리의 무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③ 클라이니히의 분류에 따르면 경찰윤리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도덕적 전문능력의 함양이다.
- ④ 경찰윤리는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윤리적 상황의 해결에 도움을 주는 응용윤리적 성격을 가지므로 ‘학제적 접근’은 필요하지 않다.

- 해설** ▶ ① 지금까지의 경찰윤리교육은 개인의 청렴도 등을 강조하는 미시적 접근법 위주로 이루어져왔다.
- ② 경찰서장이 ‘수당 허위 수령 금지’의 교양을 하였음에도 A순경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였다면 사회적·외적 윤리의 거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③ 옳은 설명이다.
 - ④ 경찰윤리는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윤리적 상황의 해결에 도움을 주는 응용윤리적 성격을 가지므로 여러 학문의 성과를 토대로 구성되는 ‘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답 ③

3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강의·강연·기고 등)에 대한 사례금을 기준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초과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때 사례금이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 상한액으로 먼저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보완해야 한다.
- ③ 파출소장이 파출소 직원들에게 위로·격려·포상의 목적으로 회식비를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각 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및 공무수행사인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 해설** 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②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③ 동법 제8조 제3항 제1호
 ④ 동법 제2조 제2호 다목·라목, 제11조

정답 ②

39 ‘경찰윤리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 중 ‘행위 중심적 성격’은 경찰관의 도덕적 자각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요구되는 것으로서 타율성으로 인해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② 경찰윤리강령은 대외적으로 조직구성원의 자질통제 기준, 국민과의 공공관계의 개선, 과도한 요구에 대한 책임 제한 등과 같은 기능을 한다.
- ③ 경찰윤리강령은 시민이 바라는 윤리표준에 맞는 행동규범을 정하여 조직구성원들이 따르게 하기 위해 추상적 행동규범을 문서화한 것이다.
- ④ 경찰서비스현장에는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의 5개항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 해설** ① ‘행위 중심적 성격’은 경찰윤리강령은 행위중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위 이전의 의도나 동기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경찰관의 도덕적 자각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요구되는 것으로서 타율성으로 인해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비진정성의 조장을 말한다.
 ② 경찰윤리강령은 대외적으로 국민과의 공공관계의 개선이나 과도한 요구에 대한 책임 제한 등의 기능을 하고, 대내적으로 조직구성원의 자질통제 기준이나 조직에 대한 소속감 고취 등의 기능을 한다.
 ③ 옳은 설명이다.
 ④ 1991년 제정된 경찰현장에서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의 5개항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정답 ③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imcodi.com 에서 제공됩니다.

40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속관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해당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각종 증명서 발급 등 단순 민원업무는 제외).
- ③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 제외한다)에는 서면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는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해설** ▶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
- ② 공무원은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해당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동강령 제5조 제1항 제7호).
- ③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서면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동강령 제16조 제1항).
- ④ 동강령 제16조의3 제1항

정답 ④